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10. 3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8호로 2022년 10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자활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상위법령에 합치하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나. 자활기금 “법정의무” 사항으로 변경에 따른 존속기한 규정 삭제
(안 제2조의2)
- 다. 준용규정의 제명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2조)
-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2022. 9. 22. ~ 10. 12.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의 설치의 의무화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폐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활기금 설치 근거 조항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2조의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립·자활의 지원을 위하여 자활기금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제1항이 개정(2019. 1. 15.)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1)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이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안 제12조에서는 준용규정의 제명이 변경(2021. 8. 26.)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였으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활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자활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 고 자 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 1. 15.>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9. 1. 15.>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1로 이동 <2021. 7. 27.>]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액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 28.>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7. 16.]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10. 3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9호로 2022년 10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7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2022. 9. 15. ~ 10. 5.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27조의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이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근거한 것임.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10. 3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50호로 2022년 10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의2)
- 나. 준용규정의 제명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4조)
-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 (2022. 8. 25. ~ 9. 14.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5조의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이는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근거한 것이며,
- 안 제14조에서는 준용규정의 제명이 변경됨(2021. 8. 26.)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였으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